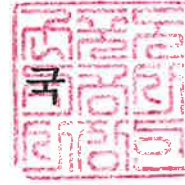


군포도시공사 제7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



2024년 12월 27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43 호

##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① 직원은 직무중심 기반의 역량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공사발전을 위하여 충실히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.

제15조를 각 1항과 2항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① 직원의 보직은 전공, 학력, 자격, 경력, 기술 등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과 경력경로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해야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보직부여 기준은 “별표 1”과 같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	관 부 서	경 영 기 획 실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기 획 실 장 관 성 우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	담당자 성명 (전 화)	현 진 환 ( 3 9 0 - 7 6 4 1 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7조(채용원칙)</b></p> <p>① 직원은 <u>업무수행 능력과 지식</u>을 가진 자로서 <u>공사발전을 위하여 충실히 근무할 수 있는</u> 사람을 채용한다.</p>	<p><b>제7조(채용원칙)</b></p> <p>① <u>----직무중심 기반의 역량과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<b>제15조(보직부여 기준)</b></p> <p><u>직원의 보직은 전공, 학력, 자격, 경력, 기능,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하며, 직급별 보직부여 기준은 “별표 1”과 같다.</u></p>	<p><b>제15조(보직부여 기준)</b></p> <p>① <u>직원의 보직은 전공, 학력, 자격, 경력, 기술 등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과 경력경로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보직부여 기준은 “별표 1”과 같다.</u></p>